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가역]

목차

전문

제 1 장 총칙(제 1 조 - 제 4 조)

제 2 장 기본적 시책(제 5 조 - 제 7 조)

부칙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거주하는 그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루어져, 그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이 큰 고통을 겪음과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에당초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간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더 심화된 인권교육과 인권계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이해와 협력을 얻고,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 국가 등의 책무를 밝힘과 동시에 기본적 시책을 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법률에서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란 오로지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이며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이하, 본 조에서 ‘본국의 출신자’라 함)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또는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또는 본국의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본국의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 3 조. 국민은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과 동시에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 4 조. 국가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

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다.

2. 지방공공단체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 2 장. 기본적 시책

(상담체제의 정비)

제 5 조. 국가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교육의 강화 등)

제 6 조. 국가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계발활동 등)

제 7 조. 국가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기타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기타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대책 관련 검토)

2.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시행 후에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다.